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2-2호
2022. 1. 7.(금)

차 례

조 례(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5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6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살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7호) 8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578호) 1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조례 제1579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조례 제1580호)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조례 제1581호)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조례 제1582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3호)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44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4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규칙 제45호) 61

훈 령(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12호)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3호) 7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 제14호) 77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2-1호) 92
-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고시 제2022-2호) 93

공 고(3)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22-22호) 94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22-23호) 95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공표(공고 제2022-24호) 99

행정예고(1)

-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2-20호) 100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
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그 명칭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함(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161,500 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2년 월정수당을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법조문 변경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별표 2).

당초 2,148,000원 ⇒ 변경 2,161,500원 / 13,500원(0.63%) 인상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 * 70% = 0.63%)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등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4항”을 “제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법조문 정비 및 대덕구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제5조, 제9조).

나. 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 등을 신설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

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제2항과 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7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에 따른”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5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6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개정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
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

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0일

-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⑦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⑧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팀에서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선서, 책임완수 등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켜야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나.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 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8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

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가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가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가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가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가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가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가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의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 및 위원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위원회를 규정함(제3조).
- 나. 위원회의 통합, 설치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라.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 등의 수당 등을 규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8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해 규정함(제2조, 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8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
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
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
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
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

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상시출장 여비를 규정함(제2조).

나. 여비의 지급구분과 공무로 인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8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덕구의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덕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대덕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

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등 지원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에 관해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나. 대덕구의회 의장과 대덕구청장 상호간 협의에 따른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8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
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
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공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

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 조례의 [] 개정 청구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직인</div>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직인</p>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읍·면·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2022.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나.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제3조).
- 다.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제5조).
- 라.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11조까지).
- 바.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에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0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제82조 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

나.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표결방법을 규정함(안 제42조).

다.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3까지).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3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자”란 당직을 수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채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의회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회사무과는 사무실에 별지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대덕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자) ① 당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

② 당직자는 대덕구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덕구청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과명									
구 분	서류보관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 상 태		문단속 상태		점검시각 및 점검				결 제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중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시 각	성 명	시 각	성 명		
월·일·요일																

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위에 서류방치여부와 캐비닛, 책상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 전기히터 등)의 전원 스위치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나.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사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훈령 제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무원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심의
4. 그 밖에 법규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7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중 대덕구의회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승진 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승진대상자의 결정)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② 6급 이하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근무실적·경력·업무수행능력·적성·의정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③ 자원봉사 등 명확한 사회 봉사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가능 배수범위에서 우선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제10조(승진자 배치) ① 특수분야 근무자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가급적 해당 분야에서 승진한다.

- ② 제2항의 특수분야 대상업무는 기술 및 행정업무 중 실제경험과 업무의 경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전보기준)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전보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기 위한 전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종과 직급을 고려하여 상응한 전보
2. 전공분야, 훈련, 경력, 조직상의 비중을 고려한 적재적소 전보
3. 특수훈련 이수 및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위에 전보
4. 동일 업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 전보

제12조(발탁) 7급 이하 공무원의 발탁은 동일 직급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발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양고사, 교육성적우수자 및 특수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발탁할 수 있다.

제13조(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연고지 배치 희망자 등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은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평등의 원칙) 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여성의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신규 임용 시 균등한 기회 부여, 차별 없는 보직관리,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평정과 승진, 포상 및 필요시설 배려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의 적용 범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정, 그 밖에 국내·국외 위탁훈련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이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입교 대상자는 다음 각 호 해당자 중에서 해당 연도 선발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선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을 추천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간부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
2.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 선발할 때에는 교육과정 미이수자를 우선으로 하되, 현직급 임용일이 빠른순으로 선발

제17조(비위 문책사항 기록관리) 본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처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운영 및 보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성 명 :

생년월일 :

○ 비위기록내용(경고·훈계 등 비위내용)

조 치 당 시 소속 및 직위	비 위 내 용	적 발 기 간	조 치 상 황		기 록 자 날 인
			년 월 일	처 분	

※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인사관리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승진대상자 및 전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교육과정의 적용범위와 선발에 관한 사항 및 비위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훈령 제1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의 활용) ① 대외직명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외직명의 적용대상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훈령 제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및 그 밖에 대덕구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덕구의회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는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경제도시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허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5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항공운임증명서(G.T.R)
3. 출장방침, 그 밖에 관련 서류

제6조(허가절차) 의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신청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다른기관 단체 및 국제행사 준비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 국제기구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이 파견기관 단체의 자체계획에 따라 자체 경비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에 의한 파견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 변경신청)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은 신규 신청으로 본다. 다만,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청은 의장이 심사·허가한다.

제10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정해진 국외출장 교육을 받고,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공무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국제관련업무의 발전과 선진사례의 의정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과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공무국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에 준용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 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예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수당(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 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5. 출장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 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변경사항 통보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누적 마일리지	신규발생 마일리지	금회사용 마일리지	잔 액 마일리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허가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심사기준 및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현지활동 및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횡선좌표		평면직각중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147	327013.66	235039.63	427321.07	235111.18	재설치
도근점	2148	326915.58	235015.26	427222.96	235086.80	재설치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1-1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1년 12월 23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끝.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중리동 254-16	계족로517번길 43	2022. 1. 7.	건물신축	계족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50, 50-1	상서당3길 19	2022. 1. 3.	건물신축	윗마을 서당이라는 웃서당, 상서당 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상서동 326-48	새말2길 48	2022. 1. 7.	건물신축	옛 지명(새말) 명칭 반영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신탄진로 662	2021. 12. 29.	토지 이동(합병)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서명인 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50,580	150,417	163	10,039

※ 투표청구 서명인 수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 이상

※ 주민등록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2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1 β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50,553	22,583		
오 정 동	13,117		1,506	4개동 이상 (1/3이상의 동)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으 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22,583명 이상을 받아야 함
대 화 동	6,272		941	
회 덕 동	10,824		1,506	
비 래 동	13,978		1,506	
송 촌 동	21,992		1,506	
중 리 동	17,317		1,506	
법 1 동	11,366		1,506	
법 2 동	13,794		1,506	
신 탄 진 동	11,305		1,506	
석 봉 동	13,026		1,506	
덕 암 동	12,004		1,506	
목 상 동	5,558		834	

▣ 대덕구의회의 의원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선거구별	선거구역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1/3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계	44,549	8,910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8,910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오 정 동	13,117		446	
	대 화 동	6,272		446	
	법 1 동	11,366		446	
	법 2 동	13,794		446	
나 선거구	계	53,287	10,658		1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10,658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비 래 동	13,978		533	
	송 촌 동	21,992		533	
	중 리 동	17,317		533	
다 선거구	계	52,717	10,544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10,544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회 덕 동	10,824		528	
	신탄진동	11,305		528	
	석 봉 동	13,026		528	
	덕 압 동	12,004		528	
	목 상 동	5,558		528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구청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수를 합한 수

- 주민등록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 2022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1/3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52,396	22,860		
오 정 동	13,224		1,524	4개동 이상 (1/3이상의 동)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 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u> <u>22,860명 이상을</u> 받아야 함
대 화 동	6,329		949	
회 덕 동	10,913		1,524	
비 래 동	14,170		1,524	
송 춘 동	22,455		1,524	
중 리 동	17,478		1,524	
법 1 동	11,473		1,524	
법 2 동	13,999		1,524	
신 탄 진 동	11,426		1,524	
석 봉 동	13,163		1,524	
덕 암 동	12,157		1,524	
목 상 동	5,609		841	

▣ 대덕구의회의 의원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선거구별	선거구역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1/3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계	45,025	9,005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u>9,005명</u> 이상을 받아야 함
	오 정 동	13,224		451	
	대 화 동	6,329		451	
	법 1 동	11,473		451	
	법 2 동	13,999		451	
나 선거구	계	54,103	10,821		1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u>10,821명</u> 이상을 받아야 함
	비 래 동	14,170		542	
	송 촌 동	22,455		542	
	중 리 동	17,478		542	
다 선거구	계	53,268	10,654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u>10,654명</u> 이상을 받아야 함
	회 덕 동	10,913		533	
	신탄진동	11,426		533	
	석 봉 동	13,163		533	
	덕 압 동	12,157		533	
	목 상 동	5,609		533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구청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수를 합한 수

- 주민등록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발안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2022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관련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19세 이상 주민 총수			연서주민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50,553	150,417	136	3,764

※ 연서 주민수: 19세이상 주민 총수(C)의 1/40 이상

※ 주민등록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 2022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일: 2021. 12. 31. /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총수			연서주민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52,396	152,260	136	2,178

※ 연서 주민수: 18세이상 주민 총수(C)의 1/70 이상

※ 주민등록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목적: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1대)
 - 나. 설치장소: 대덕구 신탄진동 125-12(붙임참고)
 - 다. 사업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운영 / 09:00 ~ 18:00
※ 점심시간 유예(11:30 ~ 14:00), 단 시민에 의한 신문고 신고는 제외
3. 공고기간: 2022. 1. 7. ~ 1. 26.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2년 1월 26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나. 제출방법

- 1) 우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교통과 주차관리팀
- 2) 팩스: 042-608-3845

다. 기타문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 주차관리팀(☎042-608-528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설치 장소 예정지(1대)



붙임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고내용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